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성흠제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,

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현행 하수도 사용료 20% 감면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30%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,

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